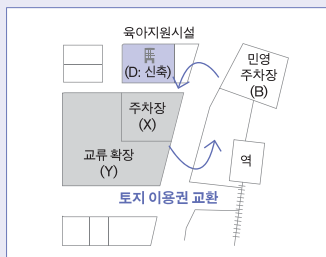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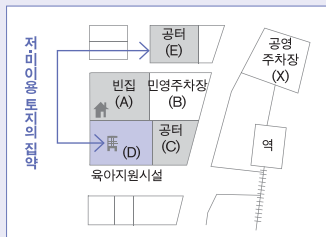


일본 국토교통성, 도시 스폰지화 대책으로 관련 법률 개정

http://www.mlit.go.jp/report/press/toshi07_hh_000122.html



저·미이용 토지 권리 설정 등
촉진계획 제도 활용 예시

자료: 국토교통성
「『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を閣議決定」, 2월 9일자 보도자료.
「『都市再生特別措置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案』
を閣議決定」, 2월 9일자 보도자료.

일본 국토교통성이 최근 지방 도시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도시 스폰지화’에 대응하기 위해 관계 법률을 일부 개정하였다. 도시 스폰지화는 인구가 줄어드는 가운데 도시 내에 빈집과 공터 등이 무작위로 발생하는 현상을 말한다. 국토교통성은 도시 스폰지화가 시민의 생활 편의를 해치고 치안과 경관을 악화시키며 지역의 매력을 떨어뜨리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법률을 개정하여 도시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빈집·공터의 활용 촉진

먼저 ‘저·미이용 토지 권리 설정 등 촉진계획 제도’가 도입된다. 이는 빈집·공터를 활용하고자 할 때 각자 소유권자가 다른 별개의 토지와 건축물을 집합하여 이용권 등을 설정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저·미이용 토지를 집약적으로 이용하여 상업시설, 의료시설 등 지역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대출해 주는 특례도 주어진다. 또한 도시재생특별조치법상 도시재생 추진 법인의 업무에 ‘저·미이용 토지의 관리’를 명시하였으며, 지자체는 저·미이용 토지 이용과 관련된 지침을 마련하고 해당 토지의 소유자에게 다양한 방식으로 이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

일상생활 속 공공공간 창출

주민과 마을만들기 단체 등 지역 사회가 빈집·공터의 소유권자와 협정을 맺고 유휴공간을 활용해 광장, 커뮤니티센터 시설 등 공공공간을 조성하고 정비·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입지유도 촉진시설 협정 제도’를 마련하였다. 또한 ‘도시계획협력단체 제도’를 통해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주민단체·상점조합 등이 도시계획안의 작성, 의견 조정 등에 참여하도록 하여 해당 단체가 공적(公的)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도시 기능의 확실한 관리

‘도시시설 등 정비협정 제도’를 마련해 민간이 도시계획에 정해진 시설을 확실히 정비·유지하도록 관리하기로 하였다. 또한 ‘도시기능유도구역’ 내 ‘유도시설(상업시설, 의료시설 등)’의 휴·폐지 때에는 반드시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도시 기능의 유지를 위해 지자체장이 이에 대한 권고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다.